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42
----------	-----------

제안연월일 : 2019년 6월 19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하는 등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 동 조례안 시행시 학교와 학부모 간의 분쟁 우려 등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용어 중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일괄 수정함.
-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중 “장애학생에 대한 입학배정을 한 경우”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로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 특수학급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입학·전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 중 각급학교를 제외함(안 제5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학생”이란”을 ““특수교육대상자”란”으로 하고,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을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학생에”를 “특수교육대상자에”로 하며, “장애학생이”를 “특수교육대상자가”로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제4호 중 “장애학생”을 각각 “특수교육대상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장애학생에 대한 입학배정을 한 경우”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의 학부모”를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로 하며,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를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u>장애학생</u>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 략)</p> <p>1. “<u>장애학생</u>”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15조에 <u>따른 특수교육대상자</u>를 말한다.</p> <p>2.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u>장애학생</u>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p> <p>3.~4. (생 략)</p> <p>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u>장애학생</u>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u>장애학생</u>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u>장애학생</u>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u>장애학생</u>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p>	<p>제1조(목적) ----- ----- ----- <u>특수교육대상자</u>----- -----.</p> <p>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p> <p>1. “<u>특수교육대상자</u>”란 ----- ----- ----- <u>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u> -----.</p> <p>2. ----- ----- <u>특수교육대상자</u>----- -----.</p> <p>3.~4. (원안과 같음)</p> <p>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 <u>특수교육대상자</u>----- ----- ----- -----.</p> <p>② ----- <u>특수교육대상자</u>에 ----- <u>특수교육대상자가</u> ----- ----- -----.</p> <p>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① ----- ----- <u>특수교육대상자</u>----- -----</p>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 3. (생략)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기준) ① (생략)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장애학생에 대한 입학배정을 한 경우

2.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입학·전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생략)

② (원안과 같음)

1. ~ 3. (원안과 같음)

4. ----- 특수교육대상자-----

③ (원안과 같음)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기준) ① (원안과 같음)

1.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

2.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교육지원청-----

②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차별”이란 「특수교육법」 제4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
2.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서울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입학·전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